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
 - 당초 : 월 8만원 → 변경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및 단서 조문 신설(안 제5조 1항)
 - 당초 : 매 분기 다음달 → 변경 : 매월 말일
 - 신설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전 근무일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변경(안 제6조 1항)
 - 당초 : 매 분기 마지막달 → 변경 : 매월 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시비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지급 시기와 지급대상자 결정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경상북도는 국가에 대한 보훈의 의미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시군별 격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까지 시군 최대 지급액(10만원)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

<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시군비) >

지급액(원)	시 군 명	비고
100,000	김천,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성주, 봉화, 울진	(10)
90,000	문경, 경산	(2)
80,000	구미, 영천, 청도, 칠곡	(4)
70,000	포항, 경주, 안동, 상주, 예천, 울릉	(6)
60,000	영덕	(1)

○ 검토 결과,

- 도내 일부 타 시군에 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적게 지급됨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보훈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급액 인상에 따라 2020년 약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나,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의 지속적 감소로 소요금액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참전유공자 : 1,240명(6.25참전 442, 월남참전 798) / 2019. 8월말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취지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